

‘유통법 개정안’ 중소기업들 뿔났다

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월 2회 휴무 합의
전국상인연합 “영업시간·휴무일 축소돼 취지 무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의 통해 일부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여야의 절충안은 이에 비해 의무휴업일이 줄고 영업제한 시간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킹을 비롯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등 지역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 도출한 절충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더욱 강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광주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가 조례를 대부분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2회 의무휴업 조항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유통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많이 실망했다”며 “새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차례’하도록 했다. 또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을 조정해 평일에도 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당초 원안은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오후 10시까지’였으며,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무휴업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매월 2일’
 - 영업제한 시간 ‘자정~오전 10시’
 -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 대형마트 점포 개설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넘으면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제외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내’로 여야의 절충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또 대형마트 등 출점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됐고 영업시작 30일 전에는 출점지역과 시기 등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도 도입했다.

여야의 절충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현행 유통법보다 강화된 규제가 당혹스러우면서도 의무휴업일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개정안이 다소 완화됐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규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일 새해 아침, 송기진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명이 무등산에서 계사년 신년 해맞이 및 2013년 시무식 행사를 갖고 새해를 맞는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졌다. <광주은행 제공>

저축은행 예금금리 1% ‘뚝’

年 3.55%~0.97% ↓

2012년 한 해 동안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1%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8월 7일 4% 아래로 내려앉은 지 4개월여만에 3.5%의 벽도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93개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 평균은 3.55%로, 지난해 1월1일 4.52%보다 0.97%포인트 떨어졌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지난 8월7일 역대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한 이후 매월 약 0.1%포인트씩 내려갔다. 올

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이달 중 3% 초반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내려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은행의 일반대출금리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차이를 보면 2011년 1월 10.52%포인트로 이후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들어서는 1월 12.41%포인트로 역대 최대 격차를 벌렸다. 이후 6월 11.45%포인트, 7월 11.23%포인트, 8월 11.49%포인트, 9월

11.43%포인트, 10월 12.07%포인트, 11월 11.35%포인트 등 하반기 중 11~12%포인트대를 유지했다.

반면에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와 시중은행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는 0.7%포인트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두 금리차가 0.7%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진 적이 없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떨어진 탓에 고객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유인은 사라져 수신액은 급감했다. /연합뉴스

카드사 ‘꼼수 영업’ 안통해

동의 없이 발급·한도 증액 요구 등 규제 강화

마구잡이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축소 표기하는 신용카드사의 ‘꼼수영업’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개정 여전법은 ▲결제능력·이용한도 심사기준 ▲광고 규제 ▲카드 발급·해지 기준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축소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일선 영업조직에선 법 개정 사실을 몰랐으며 그릇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원은 밝혔다. 대표 사례가 한도 증액을 종용하는 행위다. 개정 여전법은 카드사에서 이용 한도를 늘리도록 권하지 못하게 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자금 융통(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것도 금지된다.

내년부터 카드사는 연 1차례 이상 이용 한도의 적정성을 심사해 소득,

재산, 채무 등으로 따진 가처분소득에 견줘 한도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이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는 대출상품 광고에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는 등의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자율·수수료율의 최저수준은 크게, 최고수준은 작게 표기하는 ‘꼼수 광고’도 금지된다.

개정 여전법은 해당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산시장 ‘지각변동’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2000만원 변경
ELS 선호도 낮아지고 절세상품 인기 예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을 계기로 자산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은행 정기예금·적금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일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의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가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참체한 시장으로 돈을 옮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자산가 예·적금서 이탈 가능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크게 낮아지자 금융자산가들의 발등에 불뿔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금융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부담

이 늘게 돼 자산시장 내 자금 흐름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은 4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자와 배당으로 거둔 수입 중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표 과세상품인 은행의 정기예금·적금이 많은 자산가는 예·적금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이자가 3%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려면 원금이 13억3000만원 정도여야 했지만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원금이 6억7000만원만 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자산가들이 예금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 채권, 주식 등으로 투자 대상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연동국채 등 절세상품 인기= 금융자산가들의 투자 초점이 ‘수익률’에서 ‘세금’으로 이동하면서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보험과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꼽힌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소비자가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이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다.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면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등도 눈길을 간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점차 축소할 계획이어서 대안으로 주식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연합뉴스



“힘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심을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